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4 호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그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 만료되나 영종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내의 아파트건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1만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입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계획인 제3연륙교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하여 아직까지도 섬지역으로 고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나. 따라서, 영종도 지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직장 출·퇴근 등 주민의 피해가 심히 예상되는 바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고
- 다. 아울러, 동 건물은 제3연륙교 건설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책임있는 협의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도모에 기여 하고자 함.

라. 아울러, 인천시에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 지원 운영을 살펴볼 때 주택 1가구에 대하여 2세대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당초 1세대에 차량 2대 이내를 1가구에 차량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지원 : 제4조(통행료 지원)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인천광역시 100분의 20이내, 인천광역시 중구 100분의 20이내, 인천광역시 옹진군 : 100분의 5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 100분의 60이내)

나. 제6조(지원기준) 제1항의 1세대에 차량 2대를 1가구에 차량 1대로 지원기준을 변경함

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2013년 3월 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변경함
(안 부칙 제3998-1호 제2항)

라. 유효기간 부칙 조항 정비(안 부칙 제4354호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7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 440-6245)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440-8766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1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중구
3. 인천광역시 옹진군
4.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제6조(지원기준)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2013년 3월 31일”을 “제3연륙교 개통 시”로 한다.

조례 제435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행료 지원)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은 별도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1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중구 3. 인천광역시 옹진군 4.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제6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2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하인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준) 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하인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제399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3년 3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43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3년 3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제3998-1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연륙 교 개통 시----- 부칙(제4354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

『별표 1』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제4조 제2항 관련)

기 관	비 율
인천광역시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	100분의 20 이내
인천광역시 옹진군	100분의 5 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100분의 60 이내

※ 전체 통행료 지원금액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달성목표를 예상한 분담 비율임.